



" 청림 청신호, 부패 적신호 "

※ 주택관리번호: 2022000289(85㎡이하)
2022000290(85㎡초과)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2. 05. 13

CONTENTS

1. 공급일정	6
2. 공급현황	8
3. 신청자격	13
4. 입주자 선정	17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24
6. 신청접수 일정	26
7. 신청접수 안내	27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30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33
10. 계약 및 구비서류	34
11. 유의사항	36
12. 임대신청 문의	38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38
14. 임대주택 위치안내	39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43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44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45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장기전세주택 매각 관련 허위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반포동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현재 분양전환이나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창구로 방문인터넷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인터넷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청약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청약시 반드시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 청약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미착용자의 경우 접수 제한 예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5.13.(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대상주택: 수서동 721-1(35㎡), 왕십리 주상복합(38㎡)]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2000289(85㎡이하), 2022000290(85㎡초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1. 공급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하여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하단 “2.공급현황 ■ 재공급(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동호가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단지(지구), 해당 면적(㎡), 해당 유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또는 주거이동 신청자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3년 10월 13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 제39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2020.12.11.)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2022.05.26.까지입니다.
 - ※ 제40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2021.08.27.)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2023.02.14.까지입니다.

1 ●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대상자	접수일정	청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일반, 주거약자) 1순위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동 721-1(35, 4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 •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등촌장기전세(49㎡): 강서, 마포, 양천, 영등포구 거주자 • 송파레미니스1(49㎡): 송파, 강동, 강남, 광진구 거주자 • 신정4보금자리(49㎡):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구 거주자 • 왕십리주상복합(38㎡, 47㎡): 성동, 강남, 광진, 동대문, 용산, 중구 거주자 • 중계센트럴파크(49㎡)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 거주자 • 수유동486-682(41㎡): 강북, 도봉, 노원, 성북구 거주자 • 고척동156(48㎡) : 구로, 양천, 금천, 관악, 영등포, 동작구 거주자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우선공급 ○ 특별공급 1순위 	<p>2022.05.23.(월) 10:00 ~ 2022.05.24.(화) 17:00</p>	<p>〈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2순위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사람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85㎡초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특별공급 2순위 	<p>2022.05.27.(금) 10:00 ~ 17:00</p>	<p>〈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3순위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인 사람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p>2022.05.30.(월) 10:00 ~ 17:00</p>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규공급 단지 : 공급호수의 300%

- 재공급 단지(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모집세대수의 200%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2.05.27.(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2.05.30.(월) 오전 9시

2 공급현황

▶ 신규공급

※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단지임.

단지명 (위 치)	전용 면적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시작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주거 약자										
계		21	16	-	5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동대문구 옥동)	59㎡	7	3	-	4	356,250	35,625	320,625	59.98	23.90	44.45	128.33	개별 난방	'23.01
	84㎡	6	6	-	-	420,000	42,000	378,000	84.87	32.03	62.91	179.81		
DMC SK뷰 (은평구 수색동)	59㎡	4	3	-	1	468,750	46,875	421,875	59.95	24.13	61.81	145.89	개별 난방	'22.11
	84㎡	4	4	-	-	573,750	57,375	516,375	84.99	33.37	87.62	205.98		

▶ 재공급(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세곡지구 이하 지구(단지)는 공사 건설형, 래미안그레이트2차 이하 단지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임.

※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단지: 수서동 721-1(35㎡), 왕십리 주상복합(38㎡)

※ 금회 공가 재공급 단지 '입주자'의 경우 '22년 11월(예정)부터 입주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계				1,405	285	1,120	231								
강남구	세곡지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 세곡리엔파크3,4단지 - 강남데시앙파크	84㎡	일반	7	-	7	4	432,250	43,225	389,025	84.98	30.84	60.64	176.46	개별 난방
	세곡2지구 - 래미안포레 - 강남한양수자인 - 한신휴플러스6,8단지	59㎡	일반	32	-	32	12	384,750	38,475	346,275	59.97	25.1	36.64	121.71	개별 난방
		84㎡	주거약자	6	-	6	6	384,750	38,475	346,275	59.97	25.1	36.64	121.71	
	수서동 721-1 - 하나움	35㎡	일반	10	-	10	8	471,250	47,125	424,125	84.85	33.45	51.84	170.14	지역 난방
		84㎡	주거약자	4	-	4	2	471,250	47,125	424,125	84.85	33.45	51.84	170.14	
		45㎡	일반	6	-	6	5	200,200	20,020	180,180	35.37	18.81	22.12	76.3	지역 난방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 2,3,4,6,9,10 단지	84㎡	일반	6	1	5	-	337,500	33,750	303,750	45.01	23.50	28.16	96.67	지역 난방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1~3단지	84㎡	일반	16	-	16	12	292,500	29,250	263,250	84.83	25.21	30.48	140.52	지역 난방
		84㎡	일반	27	-	27	8	356,250	35,625	320,625	84.98	26.53	42	153.51	지역 난방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74㎡	일반	7	1	6	-	438,750	43,875	394,875	74.92	29.46	45.42	149.80	지역 난방
84㎡		일반	5	-	5	-	457,500	45,750	411,750	84.90	33.25	51.46	169.61	지역 난방	
강동리엔파크9단지	59㎡	일반	5	-	5	4	344,500	34,450	310,050	59.17	28.71	38.03	125.91	지역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강북구	수유동 486-682 장기전세 - 프레비스타	41㎡	일반	7	3	4	-	97,500	9,750	87,750	41.66	12.08	6.38	60.12	개별 난방
강서구	마곡지구 - 마곡엠벨리 1,2,3,4,5,6,7,8,10, 11,12,14,15 단지	59㎡	일반	135	35	100	5	337,500	33,750	303,750	59.79	21.13	40.49	121.41	지역 난방
			주거약자	8	-	8	2	337,500	33,750	303,750	59.95	21.18	40.62	121.75	
		84㎡	일반	72	12	60	4	393,750	39,375	354,375	84.93	29.7	56.65	171.28	
			주거약자	2	-	2	2	393,750	39,375	354,375	84.93	29.7	56.65	171.28	
	발산 3단지 - 마곡수명산파크3단지	84㎡	일반	30	6	24	-	362,700	36,270	326,430	84.53	24.38	35.61	144.52	지역 난방
등촌장기전세주택 - 등촌리본타워	49㎡	일반	11	2	9	-	232,500	23,250	209,250	49.79	25.98	54.97	130.74	지역 난방	
구로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 3,4,5,6단지	84㎡	주거약자	4	-	4	1	323,700	32,370	291,330	84.95	23.16	48.91	157.02	개별 난방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 2단지	84㎡	일반	2	-	2	2	318,750	31,875	286,875	84.97	27.79	56.69	169.45	개별 난방
	고척동156 - 고척리본타운	48㎡	일반	2	1	1	-	180,000	18,000	162,000	48.78	28.57	31.96	109.31	개별 난방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49㎡	일반	2	-	2	-	292,500	29,250	263,250	49.60	22.79	33.03	105.42	지역 난방
		59㎡	일반	9	3	6	-	352,500	35,250	317,250	59.75	26.37	39.79	125.91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 9,10,11단지	84㎡	일반	16	-	16	6	388,700	38,870	349,830	84.89	29.23	53.99	168.11	지역 난방
			주거약자	3	-	3	2	388,700	38,870	349,830	84.79	29.3	53.94	168.03	
서초구	내곡지구 - 서초다샵포레 -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	49㎡	일반	47	23	24	-	418,600	41,860	376,740	49.39	22.46	42.7	114.55	개별 난방
			주거약자	12	5	7	-	418,600	41,860	376,740	49.39	22.46	42.7	114.55	
		54㎡	일반	13	6	7	-	503,750	50,375	453,375	54.97	24.18	45.53	124.68	
		59㎡	일반	76	20	56	-	503,750	50,375	453,375	59.96	20.52	42.5	122.98	
			주거약자	15	6	9	-	503,750	50,375	453,375	59.64	20.56	42.28	122.48	
		84㎡	일반	6	-	6	4	598,000	59,800	538,200	84.41	30.39	56.73	171.53	
	양재동 102 장기전세 - 양재리본타워1단지	59㎡	일반	10	1	9	-	438,750	43,875	394,875	59.77	27.76	36.96	124.49	개별 난방
		84㎡	일반	4	-	4	1	528,750	52,875	475,875	84.97	36.48	52.55	174	
		114㎡	일반	2	-	2	8	750,000	75,000	675,000	114.94	50.18	71.08	236.2	
	양재동 212 장기전세 - 양재리본타워2단지	59㎡	일반	9	-	9	5	378,950	37,895	341,055	59.77	24.89	31.59	116.25	개별 난방
		114㎡	일반	2	-	2	1	617,500	61,750	555,750	114.78	43.22	60.69	218.69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 1,2,3,5단지	49㎡	일반	7	2	5	-	442,500	44,250	398,250	49.87	15.48	45.86	111.21	개별 난방
84㎡		일반	23	1	22	1	663,750	66,375	597,375	84.61	28.94	51.64	165.19		
114㎡		일반	30	7	23	-	795,000	79,500	715,500	114.95	32.67	62.42	210.04		
성동구	왕십리 주상복합 - 왕십리 모노퍼스	38㎡	일반	2	-	2	-	202,500	20,250	182,250	38.98	14.88	23.24	77.10	개별 난방
		47㎡	일반	3	1	2	-	232,500	23,250	209,250	47.82	18.26	28.51	94.59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1,2단지	84㎡	일반	13	3	10	-	492,700	49,270	443,430	84.13	25.64	50.99	160.76	개별 난방
		49㎡	일반	5	-	5	4	318,500	31,850	286,650	49.55	23.63	34.15	107.33	
	송파레미니스 1단지	59㎡	일반	7	3	4	-	525,000	52,500	472,500	59.87	29.32	41.28	130.47	개별 난방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송파구	위례포레샤인18단지	74㎡	일반	12	2	10	-	472,500	47,250	425,250	74.82	23.62	41.68	140.12	지역 난방
		84㎡	일반	13	3	10	-	536,250	53,625	482,625	84.73	28.66	47.22	160.61	
	위례포레샤인23단지	59㎡	일반	67	16	51	-	380,900	38,090	342,810	59.97	26.17	41.78	127.92	지역 난방
		59㎡	주거약자	4	-	4	9	380,900	38,090	342,810	59.66	26.26	41.56	127.48	
		74㎡	일반	50	23	27	-	532,500	53,250	479,250	74.95	32.04	52.20	159.19	
		74㎡	주거약자	2	-	2	-	532,500	53,250	479,250	74.95	32.04	52.20	159.19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1,6단지	84㎡	일반	15	5	10	-	455,000	45,500	409,500	84.94	20.52	41.27	146.73	개별 난방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이펜하우스1~4단지	84㎡	일반	16	-	16	11	291,200	29,120	262,080	84.86	23.84	52.43	161.13	지역 난방
		84㎡	주거약자	5	-	5	5	291,200	29,120	262,080	84.86	23.84	52.43	161.13	
	신정4보금자리주택 - 신정숲속마을	49㎡	일반	15	3	12	-	247,500	24,750	222,750	49.99	23.75	29.87	103.61	지역 난방
은평구	은평1지구 - 은평1-2,1-3,1-4,1-5, 1-7,1-8,1-9,1-10,1-11	84㎡	일반	17	-	17	13	341,250	34,125	307,125	84.79	30.26	52.23	167.28	지역 난방
	은평2지구 - 은평2-1,2-2,2-3, 2-4,2-5,2-11,2-12	84㎡	일반	51	-	51	11	360,750	36,075	324,675	84.72	26.51	44.51	155.74	지역 난방
	은평3지구 - 은평3-3,3-4,3-5	84㎡	일반	81	6	75	6	328,250	32,825	295,425	84.84	22.62	38.21	145.67	지역 난방
	은평3-10	84㎡	일반	10	-	10	14	360,750	36,075	324,675	84.96	27.76	45.35	158.07	지역 난방
의정 부시	상계장암지구 - 수락리버시티1,2단지	84㎡	일반	7	-	7	5	245,700	24,570	221,130	84.81	28.06	37.53	150.4	지역 난방
중랑구	신내3지구 - 신내우디안1단지 - 신내데시앙포레	84㎡	일반	4	-	4	4	285,000	28,500	256,500	84.65	34.1	51.48	170.23	개별 난방
	신내데시앙	84㎡	일반	30	9	21	-	294,450	29,445	265,005	84.99	21.61	32.8	139.4	지역 난방
	묵동리본타워	59㎡	일반	7	-	7	4	221,250	22,125	199,125	59.98	27.90	34.28	122.16	지역 난방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2차	59㎡	일반	8	3	5	-	783,750	78,375	705,375	59.91	27.41	32.00	119.32	개별 난방
	래미안대치팰리스	59㎡	일반	8	4	4	-	885,000	88,500	796,500	59.99	28.01	59.02	147.02	지역 난방
	래미안도곡카운티	59㎡	일반	2	-	2	1	633,750	63,375	570,375	59.98	21.59	43.73	125.3	지역 난방
	래미안신사아파트	84㎡	일반	2	1	1	-	761,250	76,125	685,125	84.89	28.17	49.28	162.34	개별 난방
	아크로힐스논현	56㎡	일반	13	7	6	-	607,500	60,750	546,750	56.88	23.77	49.30	129.95	지역 난방
	청담자이	82㎡	일반	2	1	1	-	1,050,000	105,000	945,000	82.95	28.56	66.57	178.08	지역 난방
강동구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59㎡	일반	40	13	27	-	521,250	52,125	469,125	59.35	23.20	56.73	139.28	지역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강동구	고덕숲아이파크	59㎡	일반	4	1	3	-	513,750	51,375	462,375	59.97	24.81	48.59	133.37	지역 난방
	고덕아이파크	59㎡	일반	25	8	17	-	468,750	46,875	421,875	59.99	25.08	43.17	128.24	지역 난방
강서구	강서센트레빌4차	59㎡	일반	2	1	1	-	292,500	29,250	263,250	59.96	15.61	30.25	105.82	개별 난방
	강서한강자이	59㎡	일반	5	1	4	-	405,000	40,500	364,500	59.94	27.38	37.84	125.16	개별 난방
		84㎡	일반	4	1	3	-	510,000	51,000	459,000	84.99	27.43	53.67	166.09	개별 난방
	마곡힐스테이트	59㎡	일반	17	6	11	-	476,250	47,625	428,625	59.99	21.79	41.32	123.10	지역 난방
구로구	개봉푸르지오	59㎡	일반	7	-	7	8	337,500	33,750	303,750	59.86	25.81	30.83	116.50	개별 난방
금천구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59㎡	일반	10	-	10	6	305,500	30,550	274,950	59.94	22.17	34.9	117.01	개별 난방
		84㎡	일반	2	-	2	4	540,000	54,000	486,000	84.81	30.56	49.38	164.75	개별 난방
노원구	중계한화꿈에그린	59㎡	일반	6	3	3	-	326,250	32,625	293,625	59.98	22.01	34.71	116.70	개별 난방
동작구	두산위브(사당)	59㎡	일반	6	2	4	-	390,000	39,000	351,000	59.98	20.54	37.46	117.98	개별 난방
	상도동 호성해링턴플레이스	59㎡	일반	3	-	3	1	382,200	38,220	343,980	59.98	24.23	34.43	118.64	개별 난방
	상도 두산위브트레지움	84㎡	일반	7	1	6	-	531,700	53,170	478,530	84.86	32.61	49.99	167.46	개별 난방
서대 문구	홍재금호어울림	59㎡	일반	4	-	4	1	260,000	26,000	234,000	59.18	21.76	38.61	119.55	개별 난방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59㎡	일반	13	1	12	-	837,850	83,785	754,065	59.89	27.57	38.98	126.44	지역 난방
		84㎡	일반	4	-	4	-	1,001,000	100,100	900,900	84.93	28.21	55.28	168.42	지역 난방
	래미안서초스위트	59㎡	일반	4	2	2	-	753,750	75,375	678,375	59.99	20.1	26.05	106.14	지역 난방
	래미안서초에스티지	59㎡	일반	10	3	7	-	772,500	77,250	695,250	59.99	25.17	42.10	127.26	지역 난방
	반포자이	59㎡	일반	14	-	14	4	698,750	69,875	628,875	59.98	24.76	43.09	127.83	지역 난방
		84㎡	일반	8	3	5	-	1,237,500	123,750	1,113,750	84.94	31.93	61.02	177.89	지역 난방
		방배롯데캐슬아르떼	59㎡	일반	13	4	9	-	626,250	62,625	563,625	59.97	24.30	36.87	121.14
	서초교대이편한세상	59㎡	일반	8	3	5	-	663,750	66,375	597,375	59.90	21.57	45.97	127.44	지역 난방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64㎡	일반	3	1	2	-	303,750	30,375	273,375	64.21	20.19	43.09	127.49	개별 난방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신월곡)	84㎡	일반	3	-	3	-	352,950	35,295	317,655	84.97	21.37	48.19	154.53	개별 난방
	래미안길음센터피스	59㎡	일반	4	-	4	12	423,750	42,375	381,375	59.970	23.57	37.85	121.39	개별 난방
	정릉라운유	84㎡	일반	7	4	3	-	416,250	41,625	374,625	84.99	24.75	55.56	165.30	개별 난방

자치구	단지명	전용 면적	유형	모집세대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계 (A+B)	일반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 (B)									대기중 예비자
양천구	동원데자부(신월동)	84㎡	일반	2	1	1	-	337,500	33,750	303,750	84.01	23.13	36.49	143.63	개별 난방
	목동센트럴푸르지오	57㎡	일반	3	-	3	2	532,500	53,250	479,250	57.96	17.85	41.59	117.4	지역 난방
		84㎡	일반	2	-	2	1	650,000	65,000	585,000	84.98	25.44	60.98	171.4	
	양천롯데캐슬	59㎡	일반	2	-	2	-	253,500	25,350	228,150	59.88	21.9	42.74	124.52	개별 난방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일반	2	1	1	-	345,000	34,500	310,500	84.96	20.69	24.05	129.70	개별 난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됨.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팸플릿(홈페이지 게시)을 참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2층)에 건립되어 있으며(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전용 84㎡형, 은평지구 일부세대는 복층 구조인 경우가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복층세대에 배정될 수 있음.
- 공가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상계장압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우선, 특별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0㎡초과 85㎡이하

- 64㎡형 : 서울숲아이파크
- 74㎡형 : 고덕강일2지구, 위례포레샤인18단지, 위례포레샤인23단지
- 82㎡형 : 청담자이
- 84㎡형 :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발산지구3단지(마곡수명산파크3), 상계장암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 신내3지구, 신내데시아, 신정3지구, 양재동102(양재리본타워1), 우면2지구, 위례포레샤인18단지, 은평1·2·3지구, 은평3-10, 장지지구, 천왕지구(천왕이펜하우스), 천왕2지구, 강서한강자이,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동원데자뷰, 동일하이빌뉴시티, 래미안퍼스티지,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래미안신사아파트, 정릉라운유, 청광플러스원

※ 상계장암지구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일 지역으로 간주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854,536원 이하	5,813,244원 이하	7,702,279원 이하	8,640,971원 이하	8,791,286원 이하	9,335,790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세부내용은 위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u>21,550만원 이하</u>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u>3,557만원 이하</u>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 85㎡초과 주택

- 114㎡형 : 양재동102(양재리본타워1), 양재동212(양재리본타워2), 우면2지구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4,818,170원 이하	7,266,555원 이하	9,627,849원 이하	10,801,214원 이하	10,989,108원 이하	11,669,738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세부내용은 위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u>21,550만원 이하</u>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u>3,557만원 이하</u>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4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 2022.05.16.(월)부터 발급 가능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2000289(85㎡이하), 2022000290(85㎡초과)

가. 일반공급(일반)

■ 공사 건설형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50㎡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형 : 수서동 721-1 ■ 38㎡형 : 왕십리 주상복합 ■ 41㎡형 : 수유동 486-682 ■ 45㎡형 : 수서동 721-1 ■ 47㎡형 : 왕십리 주상복합 ■ 48㎡형 : 고척동 156 ■ 49㎡형 : 내곡지구, 등촌장기전세, 송파레미니스1단지, 신정4지구, 우면2지구, 중계센트럴파크 	<p>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248,479원 이하</td> <td>3,391,059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3,212,113원 이하</td> <td>4,844,370원 이하</td> <td>6,418,566원 이하</td> <td>7,200,809원 이하</td> <td>7,326,072원 이하</td> <td>7,779,825원 이하</td> </tr> </tbody> </table> <p>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동 721-1(35, 4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 •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등촌장기전세(49㎡): 강서, 마포, 양천, 영등포구 거주자 • 송파레미니스1(49㎡): 송파, 강동, 강남, 광진구 거주자 • 신정4보금자리(49㎡):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구 거주자 • 왕십리주상복합(38㎡, 47㎡): 성동, 강남, 광진, 동대문, 용산, 중구 거주자 • 중계센트럴파크(49㎡):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 거주자 • 수유동486-682(41㎡): 강북, 도봉, 노원, 성북구 거주자 • 고척동156(48㎡): 구로, 양천, 금천, 관악, 영등포, 동작구 거주자 ○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p>※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p> <p>※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 세대의 경우 3순위 접수일에 접수해야 합니다.</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p> <p>※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p>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 style="text-align: center;"><50㎡이상 60㎡이하></p> <p>■ 54㎡형 : 내곡지구 ■ 59㎡형 : 강동리엔파크9단지, 내곡지구, 마곡지구, 묵동리본타워, 세곡2지구, 송파레미니스1, 양재동102, 양재동212, 위례포레샤인23단지, 중계센트럴파크</p>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248,479원 이하</td> <td>3,391,059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3,212,113원 이하</td> <td>4,844,370원 이하</td> <td>6,418,566원 이하</td> <td>7,200,809원 이하</td> <td>7,326,072원 이하</td> <td>7,779,825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6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p>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60㎡초과 85㎡이하></p> <p>■ 74㎡형 : 고덕강일2지구, 위례포레샤인 18단지, 위례포레샤인 23단지 ■ 84㎡형 :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발산지구3, 상계장암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 신내3지구, 신내데시앙, 신정3지구, 양재동102, 우면2지구, 위례포레샤인18단지, 은평1·2·3지구, 은평3-10, 장지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p>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60㎡초과 8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85㎡초과></p> <p>■ 114㎡형 : 양재102, 양재212, 우면2지구</p>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p> <p>※ 금회 청약가능 예치 기준금액 - 전용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사항 ■ 85㎡초과 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p>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p>〈60㎡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형 : 아크로힐스 논현 ■ 57㎡형 : 목동센트럴푸르지오 ■ 59㎡형 :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강서센터레빌4차 강서한강자이, 개봉푸르지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숲아이파크, 고덕아이파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두산위브(사당), 래미안그레이튼2차,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도곡카운티, 래미안서초스위트,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래미안퍼스티지, 마곡힐스테이트, 반포자이,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양천롯데캐슬, 중계한화꿈에그린, 홍제금호어울림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p>〈60㎡초과 85㎡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형 : 서울숲아이파크 ■ 82㎡형 : 청담자이 ■ 84㎡형 :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강서한강자이,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동원데자뷰, 동일하이빌뉴시티, 래미안신사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정릉라운유, 청광플러스원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p> <p>※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초과 85㎡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p>

※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공사 건설형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거주지순위 ➔ 배점합산	배점 동일할 경우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순 → 전산추첨으로 결정
	50㎡이상 6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60㎡초과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85㎡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순위 ➔ 배점합산	
서울시 매입형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나. 일반공급(주거약자)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1957. 5.13.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⑥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50㎡미만> ■ 49㎡형 : 내곡지구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가구원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1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2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3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4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5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248,479원 이하</td> <td>3,391,059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3,212,113원 이하</td> <td>4,844,370원 이하</td> <td>6,418,566원 이하</td> <td>7,200,809원 이하</td> <td>7,326,072원 이하</td> <td>7,779,825원 이하</td> </tr> </tbody> </table>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 세대의 경우 3순위 접수일에 접수해야 합니다.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50㎡이상 60㎡이하> ■ 59㎡형 : 내곡지구, 마곡지구, 세곡2지구, 위례포레샤인23단지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가구원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1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2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3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4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5인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248,479원 이하</td> <td>3,391,059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3,212,113원 이하</td> <td>4,844,370원 이하</td> <td>6,418,566원 이하</td> <td>7,200,809원 이하</td> <td>7,326,072원 이하</td> <td>7,779,825원 이하</td> </tr> </tbody> </table> ※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이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60㎡초과 85㎡이하> ■ 74㎡형 : 위례포레샤인23단지 ■ 84㎡형 : 마곡지구, 상암2지구, 세곡2지구, 신정3지구, 천왕지구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3. 신청자격 나항 ■ 60㎡초과 85㎡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주거약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합산	배점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50㎡이상 6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점합산	
	60㎡초과 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순위	➔	배점합산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3인이상	2인	1인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⑥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 그 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상기 가점기준표 중 ①부양가족수, ②서울시연속거주기간, ⑥감점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5.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함					
※ ③사회 취약계층의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생계급여, 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 수급자를 말함					

다. 우선/특별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 **우선/특별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유형 (전용)	계	우선공급		특별공급
			3자녀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신혼부부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59㎡	4	1	2	1
DMC SK뷰	59㎡	1	-	1	-

■ **우선공급**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통	위 "3. 신청자격 가,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3자녀이상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2003. 5.14이후 출생, 당일포함)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사람 ※ 미성년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만 인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위 "2. 신청자격 중 가,나항"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48,479원 이하	3,391,059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을 신청해야 함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 **특별공급(신혼부부)**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위 "3. 신청자격 가,나항"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생(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가구원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212,113원 이하	4,844,370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7,779,825원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854,536원 이하	5,813,244원 이하	7,702,279원 이하	8,640,971원 이하	8,791,286원 이하	9,335,790원 이하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입주자 선정순위	<p>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함</p> <p>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p> <p>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p>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p>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시 입주자 선정은 아래의 선정순서에 의함</p> <p>①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p> <p>②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p> <p>※ 자녀수 산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산정 -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입주시 유의사항	<p>계약체결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부 :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제출 - 입양부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을 신청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 됨 	

5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주거약자 주택 제외)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만)나이	50세 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 2003. 5.14.(당일포함) 이후 출생)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85㎡이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 (85㎡초과)	8년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1957. 5.13.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⑨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50%이하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3. 5.14.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2. 5.13.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⑥의 가점은 85㎡초과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⑦의 가점은 85㎡이하형 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는 제외
 - 우면2지구(114㎡), 양재 102(114㎡), 양재 212(114㎡) 신청자만 해당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⑨의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606,057원	2,422,185원	3,209,283원	3,600,405원	3,663,036원	3,889,913원	4,116,789원	4,343,666원
70%	2,248,479원	3,391,059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6,081,132원
100%	3,212,113원	4,844,370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120%	3,854,536원	5,813,244원	7,702,279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150%	4,818,170원	7,266,555원	9,627,849원	10,801,214원	10,989,108원	11,669,738원	12,350,367원	13,030,997원

※ 유의사항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점 기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6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 2022.05.23.(월) ~ 05.30.(월)

대상자	접수일정	방문청약 및 인터넷 청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일반, 주거약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동 721-1(35, 45㎡): 강남, 송파, 서초, 성동, 광진, 용산구 거주자 • 우면2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내곡지구(49㎡): 서초, 강남, 용산, 동작, 관악구 거주자 • 등촌장기전세(49㎡): 강서, 마포, 양천, 영등포구 거주자 • 송파레미니스1(49㎡): 송파, 강동, 강남, 광진구 거주자 • 신정4보금자리(49㎡):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구 거주자 • 왕십리주상복합(38㎡, 47㎡): 성동, 강남, 광진, 동대문, 용산, 중구 거주자 • 중계센트럴파크(49㎡)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 거주자 • 수유동486-682(41㎡): 강북, 도봉, 노원, 성북구 거주자 • 고척동156(48㎡) : 구로, 양천, 금천, 관악, 영등포, 동작구 거주자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우선공급 ○ 특별공급 1순위 	2022.05.23.(월) 10:00 ~ 2022.05.24.(화) 17:00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사람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85㎡초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특별공급 2순위 	2022.05.27.(금) 10:00 ~ 17:00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인 사람 -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022.05.30.(월) 10:00 ~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 입주자 선정은 주택유형별로 정한 순위에 따르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 청약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순위 및 인정횟수를 반드시 사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규공급 단지 : 공급호수의 300%
 - 재공급(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단지 : 모집세대수의 200%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2.05.27.(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2.05.30.(월) 오전 9시
- 신청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자격 및 순위의 해당 청약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신청접수 안내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자는 모집 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 횟수, 신청순위, 월평균소득, 배점세부항목, 우선공급 여부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해당자가 일반공급으로 착오신청시도 변경 불가)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 (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반드시 청약접수일 이전까지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1순위 : 2022. 5.23.(월) 10:00 ~ 5.24.(화) 17:00
- 2순위 : 2022. 5.27.(금) 10:00 ~ 17:00
- 3순위 : 2022. 5.30.(월) 10:00 ~ 17:00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 및 주택형 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로그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청약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미착용자의 경우 접수 제한 예정〉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창구로 방문인터넷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인터넷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청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취소 및 재신청은 해당 순위 청약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설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기간 및 방문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각일 10:00 ~ 17:00)

- 1순위 : 2022. 5.23.(월) ~ 5.24.(화)

- 2순위 : 2022. 5.27.(금)

- 3순위 : 2022. 5.30.(월)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청약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이 경우 청약에 장시간 소요예상)할 예정임

○ 청약위임시 제출서류

본인 신청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① 신분증 : 신청인(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③ 신청인의 인감 도장 ④ 위임장(공사에 양식 비치, 신청인의 인감 날인 필요)

※ 주민등록등·초본은 필수서류는 아니나 지참 시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하며,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서울특별시 최종전입일(주민등록초본 확인),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불입횟수(가입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로명주소 등의 사항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300~600%내외(신규공급) 및 150%~300%내외(재공급)**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서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5.13.)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 ·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06.17.(금)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2.06.27.(월) ~ 2022.06.29.(수) (방문접수는 평일 09: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2.06.2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5. 13.)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① 공통서류(전원 제출)

구비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정자 자필, 인감날인) 받아 제출 - 만14세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만65세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주민센터

② 기본서류

구비서류	내용	발급처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 적용받는 공급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85㎡ 초과 주택 신청자> •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청약홈페이지, 해당은행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 이상 ~ 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주거약자용주택 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만 제출)

주거약자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만65세[1957. 5.13.이전 출생(당일포함)]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약자주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⑤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우선/특별 공급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원본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 	<p>주민센터, 의료기관</p>

-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 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일반공급

– 신규공급(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 * 기본기준 : 공급호수의 300% 내외
- * 공급호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공급호수의 500% 내외
- * 공급호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공급호수의 600% 내외

– 재공급(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150% 내외
-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우선공급 :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특별공급 : 신청자 수에 따라 탄력적 비율 선정

※ 커트라인 내에 동일자격(동일순위, 미성년자녀수 동일)인 경우 무작위전산추첨에 의해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추첨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단,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자는 저층(1~2층)에 배정됨(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 신규 공급단지(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의 경우 신청유형별로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 시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200%내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물량을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유효기간 내 2~3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발표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 및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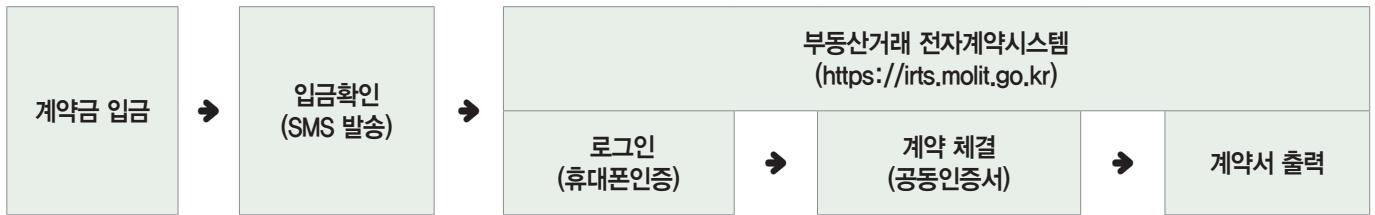
- **당첨자발표일 : 2022.10.14.(금) 14: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ARS(1600-3456)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0 계약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온라인전자계약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

▶ **계약일시** : 2022.11. 7.(월) ~ 2022.11.10.(목) 10:00~17:00(단, 점심시간 12:00~13:00)

▶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안내(문자 또는 어플알림), 즉 2번의 알림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당첨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대리인이 내방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상기 당첨자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외 ①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②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날인)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공급)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 소명 관련 조건부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내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11 •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신청 가능)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68 837 1466 1126"> <thead> <tr> <th data-bbox="272 837 596 880"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 data-bbox="596 837 1461 880">할증비율</th> </tr> <tr> <th data-bbox="596 880 1015 922">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 <th data-bbox="1015 880 1461 922">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2 922 596 987">10%이하</td> <td data-bbox="596 922 1015 987">100%</td> <td data-bbox="1015 922 1461 987">105%</td> </tr> <tr> <td data-bbox="272 987 596 1052">10%초과 30%이하</td> <td data-bbox="596 987 1015 1052">105%</td> <td data-bbox="1015 987 1461 1052">110%</td> </tr> <tr> <td data-bbox="272 1052 596 1126">30%초과 50%이하</td> <td data-bbox="596 1052 1015 1126">110%</td> <td data-bbox="1015 1052 1461 1126">1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 공급 원칙에 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청약 신청서'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p>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결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소, 연락처 변경, 개명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등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 전대 · 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잔여공기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기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12 ● 임대신청 문의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09:00~18:00(단, 점심시간 12:00~13:00)

13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3)	서울특별시	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 (주)아람엔지니어링 (주)21세기 이엔지
DMC SK뷰 (수색9)	서울특별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승우엔지니어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서광에이스

14 ● 임대주택 위치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팸플릿**을 공개하오니 하단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재공급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 임대주택 단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장기전세주택”선택 → 지역 자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전자팸플릿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접속 → 청약정보 메뉴상 전자팸플릿 → 단지명 검색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동대문구	-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일대
은평구	-	DMC SK뷰	은평구 수색동 30 일대
강남구	세곡지구	강남대시앙파크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세곡리엔파크3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1
	세곡2지구	래미안포레(세곡2-3)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강남한양수자인(세곡2-4)	강남구 자곡로 260
		강남한신희플러스6(2-6)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강남한신희플러스8(2-8)	강남구 밤고개로27길 20
	-	하니움(수서동 721-1)	강남구 광평로60길 32
	-	래미안그레이튼2차	강남구 도곡로43길 21
	-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삼성로51길 35, 37
	-	래미안도곡카운티	강남구 도곡로 320
	-	래미안신사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로2길 20
	-	아크로힐스논현	강남구 언주로 604
-	청담자이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2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강일리버파크3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4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강일리버파크6	강동구 아리수로94길 19
		강일리버파크9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리버파크10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상일로 152
		고덕리엔파크2단지	강동구 고덕로 427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로 74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강동리버스트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	강동리엔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29
-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	고덕숲아이파크	강동구 고덕로80길 134	
-	고덕아이파크	강동구 동남로79길 26	
강북구	-	프레비스타(수유동 486-682)	강북구 인수봉로 101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지구1	강서구 마곡서1로 131
		마곡지구2	강서구 마곡서1로 146
		마곡지구3	강서구 마곡서1로 132
		마곡지구4	강서구 마곡서로 175
		마곡지구5	강서구 마곡서1로 111-11
		마곡지구6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지구7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지구8	강서구 마곡서1로 81
		마곡지구10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지구11	강서구 공항대로 124
		마곡지구12	강서구 공항대로 140
		마곡지구14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지구15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	마곡수명산파크3단지(발산3단지)
	-	등촌리본타워	강서구 공항대로 359
-	강서센트레빌4차	강서구 남부순환로 11	
-	강서한강자이	강서구 양천로55길 55	
-	마곡힐스테이트	강서구 마곡중앙3로 74	
구로구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3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4	구로구 천왕로 29
		천왕이펜하우스5	구로구 천왕로 10
		천왕이펜하우스6	구로구 천왕로 9
	천왕2지구	천왕2지구2단지	구로구 오리로 1102-10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구로구	-	고척리본타운(고척동 156)	구로구 고척로52나길 25
	-	개봉푸르지오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금천구	-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금천구 벚꽃로 40
노원구	-	중계센트럴파크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	중계한화꿈에그린	노원구 덕릉로83길 9-7
동작구	-	두산위브(사당)	동작구 사당로13길 31
	-	상도동호성해링턴플레이스	동작구 상도로 207
	-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동작구 상도로30길 40
마포구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9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상암월드컵파크10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월드컵파크11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서대문구	-	홍제금호어울림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
서초구	내곡지구	서초더샵포레	서초구 현릉로8길 58
		서초포레스타2	서초구 현릉로8길 45
		서초포레스타3	서초구 현릉로8길 22
		서초포레스타5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
		서초포레스타6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서초포레스타7	서초구 청계산로11길 7-12
	-	양재리본타워1(양재동 102)	서초구 바우외로18길 20
	-	양재리본타워2(양재동 212)	서초구 매현로16길 40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1	서초구 형촌길 35
		서초네이처힐2	서초구 형촌길 15
		서초네이처힐3	서초구 태봉로2길 60
		서초네이처힐5	서초구 태봉로2길 5
	-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대로 275
	-	래미안서초스위트	서초구 서운로 221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서초구 서운로 107
	-	반포자이	서초구 신반포로 270
	-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3
	성동구	-	왕십리 모노퍼스
-		서울숲아이파크	성동구 동일로 237
성북구	-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종암로 167
	-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성북구 송인로 50
	-	정릉라운유	성북구 정릉로 307
송파구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6단지	송파구 충민로6길 14
		송파파인타운1단지	송파구 충민로 188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37길 37
		송파파크데일2단지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 6
-	위례포레스아인 18단지	송파구 위례북로4길 12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
송파구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	신정숲속마을(신정4)	양천구 신정로 110
	-	동원대자뷰	양천구 오목로 76-2
	-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양천구 오목로 354
-	양천롯데캐슬	양천구 오목로5길 19	
은평구	은평1지구	은평1-2	은평구 진관4로 37
		은평1-3	은평구 진관4로 47
		은평1-4	은평구 진관4로 77
		은평1-5	은평구 진관4로 87
		은평1-7	은평구 진관4로 100
		은평1-8	은평구 진관4로 78-7
		은평1-9	은평구 진관4로 78-8
		은평1-10	은평구 진관4로 48-17
		은평1-11	은평구 진관4로 48-8
	은평2지구	은평2-1	은평구 진관1로 21-10
		은평2-2	은평구 진관2로 60
		은평2-3	은평구 진관2로 90
		은평2-4	은평구 진관2로 67
		은평2-5	은평구 진관2로 77
		은평2-11	은평구 진관1로 55
		은평2-12	은평구 진관1로 21-9
	은평3지구	은평3-3	은평구 진관3로 67
		은평3-4	은평구 진관3로 15-35
		은평3-5	은평구 북한산로 2
-	은평3-10	은평구 진관1로 77-8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수락리버시티1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
		수락리버시티2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2
종량구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신내3-1)	종량구 신내역로1길 85
		신내 데시앙포레(신내3-2)	종량구 신내역로 165
	-	신내데시앙	종량구 용마산로 669
	-	묵동리본타워	종량구 신내로 277
	-	청광플러스원	종량구 동일로136길 15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분양권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
8.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85㎡초과 주택 신청자에 한함)
9.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0. 매매의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1.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별표2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하며, 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단지별 유의사항(공통)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음.
-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내·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 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 및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층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복도와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우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개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평형 및 세대 타입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 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동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 · 외부에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함.
- 방법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옥상 출입구, 재활용품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물(변압기, 패드스위치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층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등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에 위치한 기둥의 모양,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달라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도면치수와 안목치수는 마감재 및 시공오차에 따라 실벽 실측치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전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2022.05.1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